

의안번호	2210517
의 퇴 인	서왕진의원
회 답 일	2025.7.15.
추계번호	25B291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제1항 (재평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제1항)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u>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u>	의무규정
2	안 제53조의2 (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 위탁 등) 신설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고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제1항 (재평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3조의2(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 위탁 등)		

2. 상세 사유

□ 재평가 (안 제41조제1항)

-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를 재평가 요청 사유로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재평가 요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평가기관에 재평가 요청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법 제41조제4항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기초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으로 인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참고로 환경부에 따르면,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사례는 없음
- 다만,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기초자료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요청하는 건수를 예측할 수 없고, 환경부에 따르면 재평가는 거짓 또는 부실 작성 부분에 국한하여 수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평가에 따른 비용을 특정할 수 없어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1) 제41조(재평가)

-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하 “재평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제36조제2항 또는 제40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 2. 제53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② 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나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재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재평가기관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참고로 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1건당 평균 3억 6,270만원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은 1건당 평균 1억 2,320만원이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비용은 1건당 평균 3,100만원임²⁾

□ 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 위탁 등 (안 제53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및 대행계약 체결에 필요한 업무를 환경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위탁을 받은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 등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수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알 수 없고, 환경전문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수준 또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 유사사례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³⁾에 따라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공단에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함
 - 다만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해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제32조(평가대행자 선정기관)

- ① 사업자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평가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 선정을 요청하는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 선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수산부 장관이 해양환경공단에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원한 사례는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